주식회사의 이사의 책임완화제도에 대한 연구
A Study on Limiting Director's Liability

권 상 로
조선대학교

Kwon Sang-Ro
Chosun Univ.

요약

우리나라의 이사의 책임은 엄격하다. 따라서 이사가 막대한 손해배상책임에 직면하게 될 수도 있다는 불안감 때문에 이사 취임을 꺼리게 된다. 그로 인하여 회사는 유능한 경영인 영입에 어려움이 따르고 이사의 경영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사의 책임을 완화시킬 수 있는 독일의 입법례처럼 경영판단의 원칙을 법제화할 필요가 있으며 임원배상책임보험을 활성화 하여야 한다.

Ⅰ. 서론

주식회사에 있어서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에 행위를 하거나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상법 제399조). 그리고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 이사는 제3자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상법 제401조 제1항). 이러한 행위가 이사회 결의에 의한 것인 때에는 그 결의에 찬성한 이사도 책임을 지게 된다(상법 399조 2항, 401조 2항). 이사회에 참가하여 이의를 한 기재가 없는 자는 그 결의에 찬성한 것으로 추정한다(상법 399조 3항, 401조 2항). 이와 같은 이사의 책임 추궁 규정으로 인하여 유능한 경영진의 선임이 어렵게 될 수도 있으며 이사의 경영활동이 위축될 수도 있다[1]. 따라서 이사의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경영활동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이사의 책임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사의 책임제한 제도에 대하여 살펴보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상법상 이사의 책임의 면제 및 감경

1. 책임의 면제

상법 제399조가 규정하고 있는 이사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무의결주주를 포함한 총주주의 동의로 면제할 수 있다(상법 제400조 제1항). 또한 정기총회에서 제무제표의 승인을 한 후 2년 내에 다른 결의가 없는 때에는 이사에게 부정행위가 없는 한 회사는 이사의 책임을 해제한 것으로 간주한다(상법 제450조). 이를 소극적 책임면제라 한다.

이처럼 이사의 책임이 면제되기 위해서는 총주주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이러한 기준은 현실적으로 충족되기 어렵다고 볼 수 있으며 과도한 요건이라고 판단된다.

2. 책임의 감경

상법 제400조 제2항에 의하면 회사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99조에 따른 이사의 책임을 이사가 그 행위를 한 날 이전 최근 1년간의 보수액의 6배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면제할 수 있다. 동 규정은 회사가 자율적으로 이사의 책임을 제한할 수 있도록 2011년에 입법되었다[3].

Ⅲ. 이사의 책임완화를 위한 제도

1. 경영판단의 원칙

경영판단의 원칙(business judgment rule)이란 회사의 이사나 임원이 경영상 판단을 한 경우에, 그 판단이 객관적인 정보에 근거하였으며 합리적으로 이루어졌다면 결과적으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지 않는다는 법리이다. 경영판단의 원칙을 미국 일부 주에서는 성문화하였으며 독일은 2006년에 입법을 하였다[2]. 우리나라의 경우 지배주주나 경영진의 전횡을 차단하는 감시 및 감독기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근거로 경영판단의 원칙의 도입에 대하여 반대하는 견해도 있지만 이사들의 적극적인 경영활동을 위해서는 동 원칙을 성문화 할 필요가 있다.

2. 이사배상책임보험제도

이사의 책임이 강화되면서 이사배상책임보험의 가입이

증가하고 있다. 이사배상책임보험은 이사가 업무집행과정에 주주 및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는 보험이다.

이사의 과도한 법적 책임부담을 덜어주고 유능한 경영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이사배상책임보험제도를 활성화시켜야 한다.

이사배상책임보험은 이사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이지만 이사가 법령위반을 한 경우에는 보험회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없다. 이러한 점을 인식하고 이사는 법령에 적합한 업무집행을 하도록 노력을 하여야 한다[4].

Ⅳ. 결어

주식회사의 이사는 업무집행에 있어서 선관주의의무와 충실의무 등을 지게 된다. 이사가 이러한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회사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다면 결국 이사는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이사가 막대한 손해배상책임에 직면하게 될 수도 있다는 불안감 때문에 이사 취임을 꺼리게 된다. 그로 인하여 회사는 유능한 경영인 영입에 어려움이 따르고 이사의 경영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사의 책임을 완화시킬 수 있는 독일의 입법례처럼 경영판단의 원칙을 법제화할 필요가 있으며 이사배상책임보험을 활성화 하여야 한다[5].

▮ 참 고 문 헌 ▮

[1] 김병연, “상법상 이사의 책임제한에 대한 연구”, 비교사법, 제15권, 제1호, pp. 237-238, 2008.
[2] 최준선, 회사법, pp. 553-581, 삼영사, 서울, 2017.
[3] 고영미, “상법상 이사의 책임 논의의 최근 동향”, 기업법연구, 제29권, 제3호, pp. 261-272, 2015.
[4] 김대연, “임원배상책임보험”, 법학논고 제15집, p. 235, 1999.
[5] 고재종, “이사의 책임제한제도에 대한 재검토”, 기업법연구, 제31권, 제1호, p. 76, 2017.